

## 안전한 학교 선언

무장분쟁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 개발 문제, 폭넓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가 폭격을 당하고 불에 타 아이들과 학생, 교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유괴 당하거나, 임의 감금되었다. 무장 분쟁의 당사자들은 교육 시설을 특히 군사 기지나 병영, 감금시설로 사용해왔다. 그러한 행위는 학생과 교육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수 아동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저해하여 지역사회가 미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빼앗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무장분쟁은 학교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아동 전체의 희망과 꿈을 파괴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공격은 교육 시설과 학생, 교육자들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다. 공격과 잠재적인 공격의 위협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 접근성이 저해되고, 교육 시설의 기능이 차단되거나, 교육자와 학생들이 안전 문제로 인해 교육 시설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공격은 무관용과 배제를 보여주기 위해, 즉 여아들에 대한 교육을 금지함으로써 성차별을 증진하고, 특정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학문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교육 시설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병사로 모집 또는 이용되거나, 성폭력이나 성착취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교육기관이 공격 당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사망, 상해, 착취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칙적인 일상과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무장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다른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다. ‘분쟁 감수성이 높은’ (conflict sensitive) 교육은 분쟁에 기여하지 않고 평화에 기여할 방법을 추구한다. 교육은 개발의 기본 요소이자, 인권과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는 데도 핵심적이다. 우리는 교육의 장소들이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무장분쟁 시 교육권을 증진하며 보호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이 채택한 정책들을 환영한다. 교육의 지속성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보건 정보를 제공하며 무장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아동 및 무장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을 지지하며, 무장분쟁 중에 자행되는 심각한 아동 폭력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무장분쟁의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의 교육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군과 비정부 무장단체들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학교 시설 이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98(2011)과 2143(2014)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무장분쟁 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 for protecting schools and universities from military use during armed conflict)이 개발된 것을 환영한다. 이 지침은 기존의 국제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존의 모범 관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무장분쟁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지침을 널리 배포하고, 군과 무장단체, 기타 관련 행위자들이 이 지침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면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의무 규정 등 관련 국제법을 모든 상황에서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해와 관용, 우정을 증진하고자 할 때 교육의 역할과 교육권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무장분쟁의 현장에서 민간인,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무장분쟁 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 이 지침을 이용하며, 가능한 경우 최대한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내 정책과 운영구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기존의 감시 및 보고 체제를 포함한 여러 방법들을 이용하여, 무장분쟁 중 교육 시설에 대한 공격, 공격의 피해자,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한 데이터 수집을 증진하며, 차별 없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필요 시 위법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 우리는 국제적인 인도주의 및 개발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필요 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분쟁 민감성이 높은 접근법을 개발하여 채택하고 증진할 것이다.
- 무장분쟁 중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교육 시설의 재설립을 지원하고, 가능한 경우, 본 선언의 이행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아동과 무장분쟁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과, 유엔사무총장 아동 및 무장분쟁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및 기타 유엔 기구와 조직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 유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본 선언문의 이행과 지침의 이용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